

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김용수** · 노희천***

〈요 약〉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비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저소득층이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만 현행 근로장려금의 엄격한 수급기준에 비해 수급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수급 가구원은 적게 받은 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급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급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 “이 연구는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논문입니다. 신진연구자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한국세무학회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 세무회계저널 편집위원장님과 편집위원님들, 논문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3분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박사, ysk4u@ssu.ac.kr, 주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rhc0401@ss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7월 15일

1차수정일 2020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9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주제어〉 근로장려세제(EITC), 납세의식, 납세순응

I. 서 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는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1973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75년 시행)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9월 첫 번째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제는 기존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중 구조에서 중간 단계인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되어 3중 구조로 확충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소생계비를 보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조세체계를 복지급여체제와 연계하여 빈곤층의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을 급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에 따라 주어지는 근로장려금은 세법상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로서 조세체계를 이용한 저소득 근로계층 대상 소득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며, 소득세법의 신고 및 결정 절차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제도개편이 지니게수나 소득5분위배수의 개선이나 가처분소득 증대 등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거나(송헌재·전영준 2011 ; 홍우형 2019) 고용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홍민철 2016).

한편, 주요국들은 최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강민조 2019). 주요 세목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김관형·심태섭 2019). 현행 조세제도의 세제혜택인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 비해 조세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납세의식을 형성하여 납세순응이 제고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비수급 가구원보다 제고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액과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유인 효과와 소득재분배와 같은 본래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연구를 설계한다. 제Ⅳ장에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 결론을 기술한다.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배경

근로장려세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시행 10년을 맞은 2018년에 근로장려세제를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확대·재설계하면서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소득지원을 강화하였다. 2018년 세법개정에 따라 ① 단독가구의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었고,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④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지급행정과 관련하여, 기존 방식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경우 6개월마다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근로장려세제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내용

구 분		2018년 (2017년 귀속소득)	2019년 (2018년 귀속소득)
① 연령 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② 소득 요건	단독	1,3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2,1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가구당 1.4억 원 미만	가구당 2억 원 미만
④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주 : 2018년 가구 재산 합산액이 1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50% 감액되며, 2019년에는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가 감액됨.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19. 12. 18.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귀속(2019년 지급)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수는 3,885,211가구로 2017년 귀속(2018년 지급) 수급 가구수 1,693,612가구에 비해 약 129.4%가 증가하였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4조 3,000억 4,200만원으로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액인 1조 2,808억 2,100만원에 비해 약 235.7% 증대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먼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헌재·전영준(2011)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전체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근로유인 제고효과가 없었지만,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게는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유입과 노동공급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소득효과로 인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들은 임금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철 외(2016)는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및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패널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와 주당근로시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개인빈곤율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재정패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주당근로시간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홍우형(2019)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이 세수의 귀착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수귀착효과의 경우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신규 수급자가 증대되며, 저소득자는 수급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며, 개선요인별로는 지급액 상향조정이 총재분배 개선효과의 약 5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고, 소득요건 완화도 상당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독가구 연령조건의 완화와 재산조건의 완화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관형·심태섭(2019)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외부적 동기 뿐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세무조사가능성과 세 요인의 상호작용변수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조(2019)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주요국의 세무행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구조를 비교·검토한 후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세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납세자 친화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특징은 세무행정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전략목표와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 관리, 납세순응 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모델에 따른 납세자 유형별 불응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내부전담조직 구성, 유·무형의 인프라(infra) 확충, 상시 자문·감독기구 설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 유도였다. 또한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개입(behavioral interventions)은 마찰과 갈등,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순응도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유인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 본래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만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의 가구원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무조사나 가산세 등을 통한 사후 제재보다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사전에 유도하기 위한 조세행정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세제혜택이 아니라 수혜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여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모색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2006년 입법되어 2008년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으로서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증구간의 경우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헌재·전영준 2011; 홍민철 2016; 홍우형 2019). 최근 주요국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납세순응(tax compliance)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목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강민조 2019; 김관형·심태섭 2019).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은 현행 조세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납세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가구원과 그렇지 않은 가구원 간의 납세의식이 차별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납세의식은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 중 근로장려금액을 많이 지급받은 가구원은 적게 지급받은 가구원에 비해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효익이 더 많이 증가하여 납세의식이 보다 크게 제고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대상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액에 대한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납세의식은 근로장려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 중 기대한 근로장려금액 수준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액을 받게 되어 근로장려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근로장려금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원은 그렇지 않은 가구원보다 납세의식이 더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여 납세순응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3 : 납세의식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음의 식(1)을 회귀분석하여 각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1은 전체표본에 대해 분석하고, 가설 2와 가설 3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에 속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납세의식 점수(TC)이다. 납세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하여 납세순응이 제고되는 것이다. 관심변수는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EITC$), 근로장려금액 고저 여부($EITC_High$),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고저 여부($EITC_Sf$)이다.

만일 관심변수의 회귀계수인 β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제고되는 것이고, 반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납세의식이 저하되는 것이다.

$$TC_t = \beta_0 + \beta_1 EITC(\text{or } EITC_High \text{ or } EITC_Sf)_t + Controls + YD + \epsilon_t \quad \text{식(1)}$$

여기서,

종속변수

TC_t = 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TC_t =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TC2_t$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
$TC3_t$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관심변수	
$EITC_t$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가설 1 검증) ;
$EITC_High_t$	=받은 근로장려금액이 많으면 1, 아니면 0(가설 2 검증) ;
$EITC_Sf_t$	=근로장려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1, 아니면 0(가설 3 검증) ;
통제변수	
$Income_t$	=가구총소득 ;
$Property_t$	=가구총재산의 자연로그값 ;
$Minor_t$	=가구 내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 ;
Old_t	=가구 내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 ;
$Nmber_t$	=가구원수 ;
Age_t	=가구주 연령 ;
$Female_t$	=가구주 성별이 여성이면 1, 아니면 0 ;
YD_t	=연도더미 ;
ϵ_t	=잔차항.

3. 변수설명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구원의 납세의식이다. 재정패널 가구원용 설문지 중 ‘g.가구원 의식조사’의 ‘[b] 조세·복지제도’에는 총 7개의 납세의식 관련 문항이 있다. 이 중 표본기간인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연속된 문항인 b2, b3, b9(11차 재정패널조사 설문지 기준)를 선택하여 납세의식 변수측정에 사용하였다. 문항들의 답안은 리커트 5점 척도(likert 5-point scale)로 되어 있다.¹⁾ 회귀분석 수행 시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5에서 문항당 각 리커트 5점 척도 답변값(x)을 뺀 후 다시 4로 나눈 값($\{5-x\}/4$)을 납세의식 변수 TC 로 정의한다(신유정·전병욱 2019). TC 의 값은 0부터 1사이에서 0.25씩 간격으로 증가하며 TC 의 값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어 납세순응이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항 b2는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이고, 문항 b3는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이다. 문항 b9는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근로장려금 관련 변수로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EITC$), 근로장려금액 고저 여부($EITC_High$),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고저 여부($EITC_Sf$)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특성과 가구주 특성변수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먼저 가구특성으로는 가구총소득($Income$), 가구총재산($Property$), 만 18세

1) 다만, b9 문항의 답안은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리커트 4점 척도이다.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Minor*), 만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Old*), 가구원 수(*Number*)를 통제하였다.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조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와 노령 부양가족 및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 조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주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연령(*Age*)과 성별(*Female*)을 변수로 추가하여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더미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4.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다. 표본기간은 근로장려제도가 도입된 2008년 귀속(2009년 지급)연도부터 2016년 귀속(2017년 지급)연도까지 총 9개 연도이다.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재정패널 가구원 68,884명 중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가구원과 극단치를 보인 가구원을 제외한 최종 표본 가구원은 총 52,262 가구원/연도이다. 표본선정의 과정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표본선정

구 분	표본크기(가구원/연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패널 가구원	68,884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가구원	(12,877)
극단치로 제거된 가구원 ²⁾	(3,745)
최종표본 가구원	52,262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변수 *TC1*의 평균은 0.4127이고, 중위수는 0.5이다. *TC2*의 평균은 0.4153이고, 중위수는 0.5이며, *TC3*의 평균은 0.2245이고, 중위수는 0.25이다. 다음으로, 관심변수 *EITC*의 평균은 0.0145이고, 중위수는 0으로

2) 총 56,007개 명/연도 가구원 중 가설검증 모형인 식(1)에 대해 종속변수가 *TC2*인 경우를 회귀분석한 후 *t*-student의 절대값이 2를 초과하는 3,745명의 가구원/연도를 극단치로 보고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Truncation).

나타나서 재정패널에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가구원 비중은 매우 적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Income*의 평균은 26.2075(백만원)이고, 중위수는 18.6583(백만원)이었고, *Property*의 평균은 9.4183이고, 중위수는 9.7699이었다. *Minor*의 평균은 0.6135이고, 중위수는 0이며, *Old*의 평균은 0.4663이고, 중위수는 0이었다. *Number*의 평균은 3.1148이고, 중위수는 3이었으며, *Age*의 평균은 19이고, 중위수는 53이며, *Female*의 평균과 중위수는 0이었다.

〈표 3〉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td	1%	25%	Median	75%	99%
<i>TC1</i>	0.4127	0.2092	0	0.25	0.5	0.5	0.75
<i>TC2</i>	0.4153	0.1426	0.25	0.25	0.5	0.5	0.75
<i>TC3</i>	0.2245	0.2525	0	0	0.25	0.3333	1
<i>EITC</i>	0.0145	0.1195	0	0	0	0	1
<i>Income</i>	26.2075	28.6853	0	7	18.6583	36	121.1565
<i>Property</i>	9.4183	1.9713	0	8.8068	9.7699	10.5186	12.5245
<i>Minor</i>	0.6135	0.8977	0	0	0	1	3
<i>Old</i>	0.4663	0.7294	0	0	0	1	2
<i>Number</i>	3.1148	1.2749	1	2	3	4	6
<i>Age</i>	19	13.9507	27	43	53	64	98
<i>Female</i>	0	0.3730	0	0	0	0	1

주1) 표본크기 : 52,262 가구원/연도.

주2) 변수의 정의

TC =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

TC1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

TC2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

TC3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EITC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 ;

Income =가구총소득 ;

Property =가구총재산의 자연로그값 ;

Minor =가구 내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 ;

Old =가구 내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 ;

Number =가구원수 ;

Age =가구주 연령 ;

Female =가구주 성별이 여성이면 1, 아니면 0.

2. 상관관계분석

다음의 <표 4>는 주요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먼저 관심변수 *EITC*는 종속변수 *TC1*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의 경우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EITC*는 *TC2*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심변수 *EITC*는 종속변수 *TC1*과 비유의적이었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Income*, *Property*, *Minor*, *Number*는 *TC1* 및 *TC2*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재산이 많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와 전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세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반대로 *Old*, *Age*, *Female*은 *TC1* 및 *TC2*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가 많고, 가구주의 연령이 높으며, 여성 가구주일수록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고 상대적인 세 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통제변수들과 *TC3*의 상관관계는 *TC1* 및 *TC2*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반대 방향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과 재산이 많고, 미성년가구원 수와 전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령가구원 수가 많고, 가구주가 고연령이며, 여성 가구주일수록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4〉 주요 변수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

	TC1	TC2	TC3	EITC	Income	Property	Minor	Old	Number	Age	Female
TC1	1										
TC2	0.1564***	1									
TC3	-0.0452***	-0.0306***	1								
EITC	-0.0087**	0.0285***	-0.0064	1							
Income	-0.0990***	-0.2448***	0.0363***	-0.0451***	1						
Property	-0.0688***	-0.1428***	-0.0024	-0.0699***	0.3087***	1					
Minor	-0.0287***	-0.1021***	0.0757***	0.0730***	0.2027***	0.0703***	1				
Old	0.07293***	0.1436***	-0.082***	-0.0371***	-0.2967***	-0.0845***	-0.2794***	1			
Number	-0.0330***	-0.1293***	0.0771***	0.0478***	0.2019***	0.2419***	0.6244***	-0.1897***			
Age	0.0808***	0.1579***	-0.1339***	-0.0406***	-0.2802***	-0.0661***	-0.4886***	0.6527***	-0.3214***		
Female	0.0251***	0.0881***	-0.0557***	0.0155***	-0.1762***	-0.2677***	-0.1725***	0.0463***	-0.3555***	0.1399***	1

주1) 표본크기 : 52,262 가구원/연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 3>을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3. 차이분석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납세의식 변수 *TC1*의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비수급가구원에 비해 본인의 납세액 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지원설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차이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액이 많고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원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근로장려금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

Variable	구분	표본크기	Mean	Median	t-test	Wilcoxon's ranks sum test
<i>TC1</i>	근로장려금 비수급	51,504	0.41	0.50	1.99**	-1.81*
	근로장려금 수급	758	0.39	0.50		
	근로장려금액 적음	407	0.37	0.50	-3.77***	3.48***
	근로장려금액 많음	351	0.42	0.50		
	근로장려금만족도 낮음	552	0.38	0.50	-3.23***	3.34***
	근로장려금만족도 높음	206	0.43	0.50		
<i>TC2</i>	근로장려금 비수급	51,504	0.41	0.50	-6.53***	6.16***
	근로장려금 수급	758	0.44	0.50		
	근로장려금액 적음	407	0.45	0.50	0.53	-0.73
	근로장려금액 많음	351	0.44	0.50		
	근로장려금만족도 낮음	552	0.45	0.50	0.55	-0.60
	근로장려금만족도 높음	206	0.44	0.50		
<i>TC3</i>	근로장려금 비수급	51,504	0.22	0.25	1.47	-2.10**
	근로장려금 수급	758	0.21	0.25		
	근로장려금액 적음	407	0.22	0.25	1.44	-1.59
	근로장려금액 많음	351	0.19	0		
	근로장려금만족도 낮음	552	0.19	0.25	-2.31**	2.29**
	근로장려금만족도 높음	206	0.24	0.25		

주1)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TC=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TC1=납부한 세액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TC2=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TC3=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주2)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양측검정).

다음으로, $TC2$ 의 차이분석에 대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비수급가구원에 비해 본인의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의 만족도에 의한 차이는 비유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TC3$ 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원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보다 많은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회귀분석 결과

가.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가설 1 검증)

본 연구의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³⁾ 먼저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 의 경우 관심변수인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더미변수 $EITC$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비수급가구원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2,000만원으로 최저임금 연 2,1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연간 최대 150만원(총소득 기준금액 대비 7.5% 수준)이며, 총급여가 9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금액마저도 점차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원들은 근로장려금의 세제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의식변수 중 $TC2$ 와 $TC3$ 의 경우 관심변수인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더미변수 $EITC$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비수급가구원보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수급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납세순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현재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자신의 소득수준도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복지를 위해 세부담을 추가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담할 미래의 소득세 부담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된다.

3) 본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 결과, VIF값은 최대 2.8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데이터가 재정패널자료이기 때문에 가설에 대한 패널분석도 실시하였다.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회귀분석 결과와 유의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지면상 별도로 패널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로 Hausman 검정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TC = \beta_0 + \beta_1 EITC + Controls + \sum YD + \varepsilon_t$ 식(1)		
	Dependent Variable		
	TC1	TC2	TC3
	Coef.(t-value)	Coef.(t-value)	Coef.(t-value)
Intercept	0.4328(59.01)***	0.4556(94.14)***	0.5260(84.62)***
EITC	-0.0222(-2.91)***	0.0240(4.77)***	0.0146(2.25)**
Income	-0.0005(-14.12)***	-0.0009(-40.22)***	0.0003(12.76)***
Property	-0.0047(-9.34)**	-0.0046(-13.94)**	0.0053(12.40)**
Minor	0.0052(3.71)***	0.0031(3.34)**	-0.0024(-2.00)**
Old	0.0045(2.69)**	0.0064(5.83)**	-0.0098(-6.91)**
Number	-0.0002(-0.30)	-0.0062(-9.62)***	-0.0003(-0.36)
Age	0.0008(9.23)***	0.0006(10.95)**	-0.0009(-11.94)**
Female	-0.0026(-0.98)	0.0035(2.01)**	-0.0123(-5.44)***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62.24**	286.46**	3,480.77**
Adj.R ²	0.0184	0.0804	0.5158
VIF	Max 2.17	Max 2.17	Max 2.17

주1) 표본크기 : 52,262 가구원/연도.

주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TC = 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

TC1 =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

TC2 =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

TC3 =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관심변수

EITC =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면 1, 아니면 0 ;

통제변수

Income = 가구총소득 ;

Property = 가구총재산의 자연로그값 ;

Minor = 가구 내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 ;

Old = 가구 내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 ;

Number = 가구원수 ;

Age = 가구주 연령 ;

Female = 가구주 성별이 여성이면 1, 아니면 0 ;

YD = 연도더미 ;

 ε_t = 잔차항.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그리고 통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총소득 변수 *Income*과 가구총재산 변수 *Property*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 *TC2*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고, *TC3*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구원은 과세표준이 커서 누진세율로 인한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이다. 반면, 가구 내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 변수 *Minor*, 가구 내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 *Old*, 가구주 연령 변수 *Age*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 *TC2*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고, *TC3*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가구원 수와 만 65세 이상 노령가구원 수가 많고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소득창출능력이 낮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의향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변수 *Number*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2*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이 많아서 세부담이 감소하지만,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초생계비 등 소비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 *TC2*와는 비유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성별 더미변수 *Female*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2*의 경우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고, *TC3*의 경우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인 세부담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서 납세순응이 높지만 복지를 위한 추가적인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여성 가구주일수록 현재의 세부담보다 추가적인 미래의 세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근로장려금액의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가설 2 검증)

다음의 <표 7>은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가설 2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에 따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의 경우 관심변수인 근로장려금 고저 여부 더미변수 *EITC_High*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은 가구원에 비해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결과이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수급 대상자는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국민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는 빈곤층의 중간 단계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표 7〉 근로장려금액 고저의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TC = \beta_0 + \beta_1 EITC_High + Controls + \sum YD + \varepsilon_t$ 식(1)		
	Dependent Variable		
	TC1	TC2	TC3
	Coef.(t-value)	Coef.(t-value)	Coef.(t-value)
Intercept	0.3538(5.00)***	0.4947(9.77)***	0.6320(9.49)***
EITC_High	0.0422(2.84)***	-0.0085(-0.80)	-0.0158(-1.13)
Income	-0.0011(-1.81)*	-0.0032(-0.70)	-0.0005(-0.86)
Property	-0.0098(-1.98)**	-0.0037(-1.06)	0.0008(0.18)
Minor	0.0157(1.29)	0.0011(0.13)	-0.0238(-2.08)**
Old	0.0085(0.51)	0.0057(0.48)	-0.0111(-0.70)
Number	0.0104(1.18)	-0.0048(-0.77)	0.0074(0.89)
Age	0.0001(0.18)	-0.0006(-0.91)	-0.0024(-2.72)***
Female	0.0659(3.63)***	-0.0055(-0.43)	-0.0285(-1.67)*
YD	included	included	included
F-Value	4.92***	2.07***	41.51***
Adj.R ²	0.0764	0.0222	0.4613
VIF	Max 2.78	Max 2.78	Max 2.78

주1) 표본크기 : 758 가구원/연도.

주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TC = 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

TC1 =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

TC2 =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

TC3 =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관심변수

EITC_High = 근로장려금을 중위수보다 많이 받았으면 1, 아니면 0 ;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표 6>을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따라서 이 결과는 저소득층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의 경우에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수준이 높을수록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액의 고저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모두 저소득층이므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TC2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복지를 위한 증세의 세제개편이 있더라도, 저소득층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의 실제 세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TC3$ 도 비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설 1의 분석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이 비수급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가설 2의 분석결과는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가구원이 적게 받은 가구원보다 정부의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의 환급이기 때문에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세제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통제변수는 가설 1 분석결과인 <표 6>과 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유의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가설 3 검증)

본 연구의 가설 3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가설 3도 가설 2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가설 3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⁴⁾에 따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1$ 과 $TC3$ 의 경우 관심변수인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고저 여부 더미변수 $EITC_SY$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로장려금액을 지급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종속변수인 납세의식 점수 중 $TC2$ 의 경우 관심변수 $EITC_SY$ 의 회귀계수가 비유의적이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된다. 가설 3의 분석결과, $TC1$ 과 $TC3$ 가 유의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급가구원은 만족도가 낮은 수급가구원에 비해 비용인 납부세액 대비 효익인 정부정책의 혜택을 더 크게 인식하므로,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어 향후 복지를 위한 세부담 증가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들은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세부담이 낮으므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의 고저는 세부담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TC2$ 가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는 <표 6>과 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역시 유의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는 재정패널조사 가구용 설문지 'H. 근로장려금 [a] 근로장려금 수령 현황'의 a3. 5) 장려금액만족도와 6) 장려지급절차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납세의식 변수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표준화 한 이후에 가중평균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TC = \beta_0 + \beta_1 EITC_Sf + Controls + \sum YD + \varepsilon_i$ 식(1)		
	Dependent Variable		
	TC1	TC2	TC3
	Coef.(t-value)	Coef.(t-value)	Coef.(t-value)
<i>Intercept</i>	0.3590(5.09)***	0.4909(9.71)***	0.6082(9.19)***
<i>EITC_Sf</i>	0.0474(2.82)***	-0.0020(-0.17)	0.0420(2.67)***
<i>Income</i>	-0.0011(-1.80)*	-0.0003(-0.68)	-0.0004(-0.70)
<i>Property</i>	-0.0100(-2.02)**	-0.0036(-1.04)	0.0013 (0.29)
<i>Minor</i>	0.0236(1.94)*	0.0001(0.01)	-0.0219(-1.91)*
<i>Old</i>	0.0062(0.37)	0.0057(0.48)	-0.0135(-0.86)
<i>Number</i>	0.0064(0.72)	-0.0046(-0.73)	0.0039(0.47)
<i>Age</i>	0.0002(0.28)	-0.0006(-0.89)	-0.0021(-2.46)**
<i>Female</i>	0.0600(3.27)***	-0.0057(-0.44)	-0.0370(-2.15)**
<i>YD</i>	included	included	included
<i>F-Value</i>	4.91***	2.03***	42.2***
<i>Adj.R²</i>	0.0763	0.0214	0.4655
<i>VIF</i>	Max 2.77	Max 2.77	Max 2.77

주1) 표본크기 : 758 가구원/연도.

주2)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TC =납세의식 점수(=0점에서 0.25 구간씩 증가하여 최대 1점,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우수함) ;*TC1*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높은 점수 ;*TC2*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 ;*TC3* =복지를 위한 증세에 본인이 추가로 높은 세율을 부담할 의향이 있을수록 높은 점수 ;

관심변수

EITC_Sf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중위수보다 높으면 1, 아니면 0 ;

나머지 변수의 정의는 <표 6>을 참조할 것.

주3) ***, **, * : 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V. 결 론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소생계비를 보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조세체계를 복지급여체계와 연계하여 빈곤층의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제도개편이 소득재분배 효과나 고용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근 주요국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향하여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더 많이 제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비수급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비수급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혜택보다 세금납부로 인한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비수급가구원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보다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이 수급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여 향후 납세순응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액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가구원은 적게 받은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수급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가구원은 만족도가 낮은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로장려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고용유인 효과와 소득재분배와 같은 본래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증분석하여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하지만 재정패널자료에 의하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원은 758명/연도이고 비수급가구원은 51,504명/연도이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한 분석결과의 차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각 집단의 규모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재정패널자료가 동일 표본가구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편의나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조. 2019.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6호 : 63-85.
- 국세청. 2019.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2018.12.18.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원 최초 지급-청년, 노인,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 기획재정부. 2017. 『간추린 개정세법』.
- 김관형·심태섭. 2019.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 9-42.
- 송헌재·전영준. 2011.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상일인쇄.
- 신유정·전병욱. 2019. “납세자의 위협회피성향이 납세순응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6권 제4호 : 9-35.
- 홍민철·문상호·이명석. 2016.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 1-27.
- 홍우형. 2019.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21권 제3호 : 3-33.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on Tax Consciousness

-Focusing on the Financial Panel Data -

Yong-Soo Kim* · Hee-Chun Roh**

〈Abstract〉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is a work-linked income support system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08 to enhance the willingness of low-income workers to work and support their actual income. This study was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n whether the labor incentive tax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tax compliance by enhancing the tax consciousness of workers in households that received EITC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additional analysis was made on whether the higher the amount of EITC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EITC amount and the payment procedure, the higher the tax consciousnes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household members of the households receiving the EITC and the tax consciousness of the non-paid households. Household members who received EITC were found to have less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compared to taxes paid by non-paid household members, to have a lower tax burden than taxpayers with similar economic abilities, and to be willing to pay more taxes if they raise taxes to expand welfare. These results are judged to be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benefits received from the EITC do not meet the expected level because the level of the supply and demand is lower than the current strict supply and demand standard for the EITC, although the households that received the work incentiv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loss of the taxes paid because they ar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according to an analysis of only those who received EITC, those who received more EITC recognized that they received more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an those who received less.

Third, according to an analysis of only those who receive EITC, those who are more satisfied with EITC are perceived to have a higher level of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an those who are less satisfied with the EITC, and are willing to pay more taxes to increase welfare.

*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ysk4u@ssu.ac.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rhc0401@ssu.ac.kr, Corresponding Author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presenting the results of an empirical analysis to the tax administration participants, including tax authorities, taxpayers, and tax agents, that the EITC tax system not only achieves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such as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but also enhances the tax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households in the households receiving the EITC.

〈Key words〉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Tax Consciousness, Tax Compliance

부 록

〈11차 재정패널조사 가구원용 설문지 ‘g.가구원 의식조사’ ‘[b] 조세·복지제도’ 설문 문항〉

b2.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③ 적절한 수준이다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b3.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세금 부담이 매우 높다 ② 세금 부담이 약간 높다 ③ 적절한 수준이다 ④ 세금 부담이 약간 낮다 ⑤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
b9.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귀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②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③ 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④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⑤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주 : 문항은 조사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11차 재정패널조사 가구용 설문지 ‘H. 근로장려금’ ‘[a] 근로장려금 수령 현황’ 설문 문항〉

a3.	5) 장려금액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a3.	6) 장려금지급절차
	① 매우 간편 ② 대체로 간편 ③ 보통 ④ 다소 불편 ⑤ 매우 불편